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. 2. 14 선고 2016가단2151 판결 [임대차보증금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변론 종결 2017. 1. 10

판결 선고 2017. 2. 14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6. 2.부터 2016.11. 25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2015. 6. 1. F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G 지상 4층 건물 중 4층 주택 부분 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)을 임대차보증금 40,000,000원, 임대차기간 2015. 6. 1.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F에게 임대차보증금 4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나. F은 2015. 8. 1.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F을 상속하였다.

다. 원고는 2016. 3. 18.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(피고 E),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(피고 B, D), 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2016. 6. 1.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. 6. 2.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2016. 11. 25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전진우